

#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일시 2024년 5월 28일(화) 14:00~16:30

장소 바비엡2 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 룸





#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일시 2024년 5월 28일(화) 14:00~16:30

장소 바비엡2 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 룸





#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4년 5월 28일(화) 14:00 ~ 16:30
- 장 소 : 바비엡2 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 룸(5호선 서대문역 6번 출구)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진 행

시간	내용
13:50~14:00	참가자 등록 및 장내 정리
진행 : 오주영(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14:00~14:10	참석자 소개
14:10~15:00	<p><b>&lt;실태조사 결과발표&gt;</b></p> <p style="text-align: right;">좌장 : 염형국(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p> <p>발표 1. 스톱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한민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p> <p>발표 2. 스톱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보호 지원기관 및 피해자 인터뷰 결과 윤상연(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p>
15:00~15:10	<휴식>
15:10~16:00	<p><b>&lt;지정 토론&gt;</b></p> <p>① 전지혜 계장(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톱킹정책계)</p> <p>②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p> <p>③ 신동진 서기관(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p> <p>④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p> <p>⑤ 김은호 변호사(사단법인 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p>
16:00~16:20	전체 토론
16:20~	폐회 및 정리

# 목 차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발표 1.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 7

한민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41

- 보호 지원기관 및 피해자 인터뷰 결과

윤상연(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지정 토론

전지혜 계장(경찰청 스토킹 정책 담당 계장) ..... 63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67

신동진 서기관(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72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74

김은호 변호사(사단법인 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80

발표 1

#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한민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한민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목차]

<p><b>1. 해석론에 빠진 스토킹범죄</b></p> <p><b>2. 구성요건별 쟁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li> <li>[2] 정당한 이유 없이</li> <li>[3] 스토킹범죄 행위 태양</li> <li>[4] 상대방에게</li> <li>[5] 불안감 또는 공포심</li> <li>[6] 지속적 또는 반복적</li> </ul>	<p><b>3.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의 공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후속 피해자 보호조치 미비</li> <li>[2]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정조치 불이행 발생</li> <li>[3] 피해자 사망 책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문제</li> <li>[4] 교정시설 수용 중 스토킹범죄의 지속</li> <li>[5] 가해자 식방 통보 절차 미비</li> <li>[6] 형사공탁의 기계적 양형 참작</li> <li>[7] 성적 목적 미고려</li> <li>[8] 미성년 피해자 미고려</li> </ul>
--	--

## 1. 해석론에 빠진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가목부터 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4] 상대방에게 [5]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6]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부터 [6]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범죄성립

요건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이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후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되어 제정 기준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개별 스토킹 사건마다 구성요건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고스란히 피해자 구제에의 한계로 남는다. 이번 발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중 소극적인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해당성 해석,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의 고려가 미흡한 상황을 보여주는 스토킹범죄 전담조사관 심층면접 조사 및 판결문을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 2. 구성요건별 쟁점

### [1]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나, 그 의사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 괴롭힘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정의와 비교하였을 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정의에는 ‘명시적’이라는 관형사가 제외되어 있다. ‘명시적’이라는 관형사를 넣고 빼는 것은 스토킹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경범죄처벌법과 같이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가 되면 스토킹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람표를 만들 때 문자를 주고받고 하면 일단은 그건 배제시키고 마지막에 진짜 의사에 반해야 되니까 ‘야 그만 연락해라’라고 딱 문자를 고지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을 안 받거나 하는데 문자가 계속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 식의

문자는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스토킹범죄 법정형이) 이제 3년 이하잖아요. 긴급체포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심하면 구속, 그리고 잠정조치 4호에 전자발찌까지 채울 수 있는 강력한 제재들이 들어가는 거에 반해서 행위를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엄격하게 해석될 만한 기준이 없고, 판례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수사관들 자체도 약간 헛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이 스톡킹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검사가 보완수사 내리는 내용의 거의 한 90%는 명시적 의사 확인하고 헤어진 일자 확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언제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일자를 특정하여야 스톡킹범죄 성립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실무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스톡킹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신문, 폴리그래프’와 같은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여길 정도로 현재 스톡킹처벌법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스톡킹범죄 전담 경찰관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너희들이 스톡킹 적용했으면 확실히 이 사람이 명시적 의사로 거절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이니까 굳이 이 스톡킹을 적용한 거 아니냐. 근데 막상 보니까 명시적 의사도 제대로 확인된 것도 없다. 그래서 검사가 보완수사 내리는 내용의 거의 한 90%는 명시적 의사 확인하고 헤어진 일자 확인하고, 그리고 범죄 시점 및 장소를 더 특정해라. 이 내용이고 굳이 이걸 법률을 나눠라,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죽어 나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인한테, ‘검사가 정확히 언제 헤어졌는지 다시 한번 조사하라는데요.’ 이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 저희 헤어졌다니까요.’ ‘언제요?’ ‘작년 7월이었나?’ 또 피의자는 ‘뭔 소리예요? 우리 계속 만나 왔어요.’ 이러는데 연인 사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저는 결국에 대질신문, 폴리그래프, 이런 또 부수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송치를 보내게 되면은, 그때 보완수사 이렇게 와버리면 사실 (피해자에게) ‘정확히 언제 헤어졌어요?’ 이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가해자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냈던데 어디서 보냈어요?’ 하면 잘 모르죠. 당연히 다 이러죠. 일반인은 다 이런데, 근데 검찰에서 내놓는 보완서는 대부분은 헤어진 일자 진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헤어진 일자) 명확하게 하세요.’

검사들하고도 많이 부딪힌 부분은 스토킹 정의나 이런 부분을 의을을 하는 게 기준이 틀려요. 검사들하고 우리하고 (기준이) 틀려요, 완전히. 우리는 웬만하면 다 스토킹으로 의을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해가지고 보내면 서류를 보내면 전화 와서 막 뭐라고 해요. 이게 왜 스토킹이냐고 하면서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그중에서도 조금 유독 그런 또 검사분이 계셔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고. 이게 또 검사들도, 공판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부서마다 또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요.

고소나 진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우 때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들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상담을 해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도 한다.

저희가 유일하게 그럴 수가 있는 게 고소, 진정단계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되고 이걸 된다. 민원인도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요즘 시대에는 명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절 의사부터 딱 (기산)하는 순간 한 차례라도 더 되면 우리는 그걸 스토킹이 된다고 본다.

그래도 이제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거절 의사가 명확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사실 묶는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로 묶은 만큼 저희는 이 모든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그 스토킹을 죄수로 기산을 하려면 거절 의사부터 저희는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행위든 간에, 협박이건 뭐건 간에, 다 스토킹인데 거절 의사가 없다면 스토킹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저희는 그걸 찢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그게 찢기가 정말 힘들어요. 민원인들 또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고.

피해자한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 수사관이 만나서 우리나라 법이 이제 행위와 범죄를 나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로 성립이)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사건 접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식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행위가 될 법한 것들은 솔직히 다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범죄에 이르지 않는 행위들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사관들이 “왜 안 돼요”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처벌불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또 강력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걸 설명해 줘야 해서 아직까지 힘든 부분도 좀 있고요.

## [2]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적 허용범위에 해당하는 행위, 예컨대 민사집행관의 공무집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채권추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외 ‘정당한 이유 없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나 담당자마다 상이한 가운데, ‘넓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사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이런 등의 행위라고만 규정이 돼 있을 뿐이지 그거를 사실상 너무 넓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처벌에 비해서. 우리는 또 어쨌든 법률에 해당이 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 구성요건에 맞으니까 우리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좀 황당할 것 같기도 해요.

헤어진 연인 간에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다.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3노1528 판결]

하급심 판례가 사실상 수사단계의 판단을 좌우하는 이정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에서 제외하는 판례는 향후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유사 판례를 수시로 찾아본다고 언급하였으며, 스토킹처벌법 관련 최근 판례들은 스토킹범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심층면담에 참여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발생했던 혼선이 스토킹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판례도 보니까 되게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넓게 인정을 받다가 너무도 많아지기도 하고 하나씩. 옛날에 통매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통매음도 예전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넓게 다 인정해 주다가 갈수록 엄청 높여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스토킹도 좀 통매음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옛날 판례를 참고해도 도움이 안 돼요. 최근 판례들이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좀 거기에 맞춰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토킹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피해자 보호조치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요건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두고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두었어야 할 것이나 입법적 실수 등으로 인해 빠진 것이라고 보거나 가해자가 ‘좀 억울’하고 ‘황당’할 것이라고 여긴다.

잠정조치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했을 때 성립되는데 잠정조치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위반 법조항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잠정조치가 이미 결정이 됐는데 피해자가 피의자한테 합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할 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했는데 잠정조치 위반이 된 거예요. 잠정조치 위반에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건 좀 억울하거든요.

### [3] 스토킹범죄 행위 태양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가목부터 사목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논하기 한층 어려워진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기 위한 스토킹범죄 수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스토킹행위 태양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법방식은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 및 검사들의 언급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초점 집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피해자가 부재 중인 빈집에 들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이사 간 집에 찾아가는 경우, 피해자 부재 중에 쪽지를 적어서 붙여놓는 경우, 자기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빛을 비추는 행위를 한 경우, 가게 부근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나 대중은 스토킹범죄라고 여기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드론을 띄워서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을 악용하여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실무상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아서 법 적용 여부를 고민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가 부재 중인 빈집에 들어가는 경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갔지만 대리 중임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갔다면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사간 집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미 이사를 가서 현재 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있는, 생활하는 장소에 피해자가 끊임없이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처벌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희 사건에 있었던 사안인데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나 집 주변 벽에 빨간색 글씨로 쪽지를 적어서 붙여놓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재 중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접근으로 보기 어렵고 또 물건을 도달시켰다거나 두는 행위로 적용하기도 좀 애매한 사안이었습니다. 또, (가해자가) 자기 집에서 남의 집에 불빛을 비추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접근으로 보기는 어렵고 물건 등의 빛은 또 포함되지 않아서 물건 등을 도달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게 부근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접근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일정 거리에서 피켓만 들고 있었던 행위를 또 접근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친구 등 제3자를 통해서 SNS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도달, 제3자를 통하여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스토킹을 해서, 그 제3자의 행위가 독립해서 스토킹 범죄에 성립하는 경우는 당연히 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가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또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정범으로, 제3자도 같이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제3자에게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원 스토킹 행위자 스토킹 행위에 포섭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 스토킹 행위자의 범행임에도 제외가 돼서 불법의 정도나 지속성 반복적 요건 판단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4] 상대방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동거인이나 가족을 포함시킨 취지는 동거인 또는 가족과 피해자 간의 친밀도 및 물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스토킹 행위에 못지 않게 심각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친밀도 및 물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볼 때 학교나 직장 등에서 피해자를 매일 만나거나 생활을 공유하고 있어서 가족보다도 더 자주 교류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직접 당하는 스토킹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장할 경우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주변인들에 대한 접촉이 모두 스토킹 행위로 포섭된다거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외에 동거인 또는 가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스토킹행위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시에도 재차 논의되었으나 개정 없이 제정 당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거주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거인이나 가족 외에도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동료나 가까운 지인 등을 스토킹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같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상황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범위를 상대방 본인이나

동거인, 가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규정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형사사법 실무상으로는 동거인이나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나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본인에 대한 스토킹으로 이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나 지인에 대한 별건의 스토킹범죄로 입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검사 또한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들며, 직장동료나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또한 원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스토킹범죄의 일부임에도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대방의 친구나 직장 동료의 계정을 탐색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친구 신청 수락 요청을 한 뒤에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교사인 상대방을 스토킹하기 위해서 그 학교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안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동거인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동거인이나 친밀한 관계인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친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의율하기가 어렵습니다.

## [5] 불안감 또는 공포심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스토킹행위의 결과에 있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자유로운 생활형성의 침해라는 요건을 넣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스토킹행위 결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포함하였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상황만으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법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둔다 하더라도 입법목적에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였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라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내지 피해인식을 구성요건으로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야만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스토킹 피해자라면 으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는 피해자다움의 전형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그 내용 자체도 사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만나달라 이런 걸 우리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불쾌감을 공포감이나 불안감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만 확실히 명시적 의사가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어거지로 이건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애매하다 보니까. (중략) 지금은 오히려 법이 그만큼 강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다, 명시적으로 딱 잘라 말해줘야 하는 거지.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그거 불안감과 공포심은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만 아는 거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포를 느꼈는지 불안감을 느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성추행, 강제추행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걸 일반인이 봤을 때 저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느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인 가해자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오인 또는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3노1528 판결]

## [6] 지속적 또는 반복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기관 간 해석 및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은 범죄일람표 작성이라는 세부적인 상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범죄가 언제부터 성립했는지, 몇 건의 범죄가 발생했는지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지난해지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에 따르면 형사사법 실무상 잠정조치 신청 시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지 않으면 검사가 신청을 반려하는데, 스토킹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스토킹 가해자가 발송한 수백여 개의 메시지를 열람하여 그 중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부터 메시지를 추출하여 표로 정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특정 회사에서 만든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사진 화면으로만 컴퓨터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는 곧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이 육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 한 건 한 건을 타이핑해서 범죄일람표로 옮겨야 함을 뜻한다. 범죄일람표 작성 기준의 모호함과 수고로움은 스토킹범죄의 지속 기간 또는 반복횟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동시에, 결국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이 스토킹범죄 사건 수사를 번거로워하고 스토킹범죄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자 같은 경우는 주고받은 문자, 그것도 애매해요. 솔직히 범죄사실 작성하는 것도 저도 가서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범죄사실, 일람표를 작성을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맞는 거냐. 이게 모든 문자를 다 해야 되는 거냐. (검사도) 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적정히 알아서 그냥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내놓는 보완서는 대부분은 범행 날짜가 특정된 범죄일람표 작성하세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럼 범죄일람표, 솔직히 30건이 최소예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보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귀찮죠. 그럼 저희는 이제 사건이 쌓이는 거죠.

일람표가 작성이 안 되면 검사들이 반려해요.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 기록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죠. 검사들도 솔직히 그 핸드폰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캡처한 내용하고 일람표 작성한 내용이 만약에 누락됐다, 예를 들어 캡처한 내용에는 들어있고 진술한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왜 이거 일람표에 안 들어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람표 작성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문자 천 몇 통 보내고 이런 걸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라고 보완도 엄청 내려오거든요, 일람표 작성하라고.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잠정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일람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람표 작성이 정말 짜증 나요, 진짜. 그거 막 천 몇 건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막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것도 직원들이 많이 힘들죠. 정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문구만 스토킹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지. 문자 오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해요. 일람표 작성하는 기준도 별로 없고. 이게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 3.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의 공백

#### [1]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후속 피해자 보호조치 미비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공간적 분리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법원의 유죄선고 전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장 오랜 기간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구속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구속 외에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잠정조치 2호”) 및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잠정조치 4호”)를 두고 있다. 그중 유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유치 결정이 있게 되면 최장 1개월의 기간 동안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공간적 분리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스토킹처벌법상 유치는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공간적 분리라는 결과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법적인 의미는

사뭇 다르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있어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해 왔으며, 유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한 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2.0%(전심급 21,988건 중 18,034건)이었던 데 반해,<sup>1)</sup> 스토킹처벌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377건 중 354건(67.4%)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스토킹범죄에 있어 가해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신중한 법원의 경향은 구속뿐만 아니라 유치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기간 동안 유치 신청된 486건 중 210건(43.2%)에 대해서만 유치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별도로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가 스토킹범죄에 재차 노출되었던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아래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 소주병, 망치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가 거듭되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결국 피해자에게 중한 재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대)은 2013.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생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만 집에 남겨두고 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특수협박). 8개월여 경과한 시점인 2022. 1. 1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낭비한다며 화를 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휴대전화, 먼지 제거용 롤러,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서어 손괴하였다(폭행 및 재물손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현행범인 체포에서 석방된 때인 피고인은 2022. 1. 12.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위협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두드려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으며(특수재물손괴),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때로부터 3개월여 경과한 시점인 2022. 4.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고

---

1) 법원행정처(2023), 2022 사법연감, 736쪽.

생각해 격분하여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고 아이와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에 찌를 듯이 휘둘렀다. 피고인에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도 적용되는 등 마약류 복용으로 인해 피고인의 폭력성 및 재범위험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였으나, 법원은 연이은 현행범인 체포에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피해자가 경험한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를 낮게 평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2283, 2022고단2615(병합), 2022고단3927(병합) 판결]

## [2]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정조치 불이행 발생

다음 일련의 사례들은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잠정조치는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잠정조치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리어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대표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로 귀착되었음을 보인다. 이 중에는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특별한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심문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반복한 사례도 있다.

이들 사례들을 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는 것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반성의 계기로 극적 전환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해자의 다짐, 피해자의 용서 등을 이유로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사전심문 과정이 흑시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피고인은 2022. 6. 15.과 2022. 8. 4. 스토킹범행 후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 경고 문자나 전화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고 2022. 8. 11.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2

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 범행으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가 청구되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잠정조치가 인용되었다. 이후 잠정조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불이행하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결국 2022. 11. 29. 재범으로 뒤늦게 구속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스토킹범죄를 계속하였는데, 수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갈 수 없게 되자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숨김과 거짓이 많았고 진실되게 살아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며, 편지 봉투에는 수의(囚衣)를 입은 남자 모습을 그렸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 688 판결].

피고인은 2022. 3. 26. 피해자가 침실에 다른 이성과 함께 있던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마당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기(길이 약 34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 등을 깨뜨려 수리비가 5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특수재물손괴).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자,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양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27. 09:1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기(길이 약 34cm)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약 24cm)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특정범죄가중 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기, 빈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67 판결].

피고인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심문까지 받은 바 있었다. 구체적으로, ① 2022. 1. 29.자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2022. 5. 31.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② 2022. 7. 4.자 스토킹행위 및 2022. 7. 12.자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2022. 7. 15.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2022. 7. 19.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③ 앞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기에 앞서 2022. 4. 6.자 잠정조치 불이행이 한 차례 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2. 7. 19.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며, ④ 2022. 7. 7.자 잠정조치 불이행이

추가 발생하여 2022. 11. 9. 공소제기 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이 적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선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7596 판결]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까지 찾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피해자 직장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피해자는 직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매우 불량한 태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말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혔다. 특히 주거침입 및 손괴를 수반하는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노3854 판결]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회에 걸쳐 연락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감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는 등으로 폭행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으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재차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1418 판결]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우 집요한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로도 상당 기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등 대담한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전화 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는 약 16,150회에 달한다. [창원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고단1639 판결].

인신구속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보다는 잠정조치로서의 유치 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대신하여 유치를 결정하면서 가해자가 유치 집행을 피해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릴 가능성은 미처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유치 결정을 집행하는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유치 결정을 통보받은 가해자가 유치 집행을 피해도주하거나 잠적한 사이 유치 결정기간이 도과되어 버려 유치가 집행되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하며, 도주하거나 잠적한 가해자를 찾아낸 시점부터 유치 결정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늦게 출석할수록 유치 집행기간이 짧아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걸 이제 구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행 못한다, 혹은 그 사람이 이행 못한다 해서 아직까지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구속영장보다는 발부가 쉽죠. 그래서 4호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집행하고. 근데 (잠정조치) 4호 집행할 때 가해자가 출석 안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날짜 지나버려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집행 못하고.

### [3] 피해자 사망 책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문제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된다. 우리 법원은 경험칙상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범죄의 기수가 인정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Adäquanztheorie)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피해자의 심경에 영향을 주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과 사망 사이에 형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협박 및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피해자 사망 당일에 피해자를 향해 물리적·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사망에 대한 가해자의 죄책을 묻기 쉽지 않은, 참혹한 법적 현실을 보여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반 기간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로, 피해자는 2021. 11. 18. 오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동작대교’에서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심경에 영향을 주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1687 판결]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행위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형법 제238조 제2항 및 제3항(§ 238 Abs. 2 & 3 StGB, Nachstellung)<sup>2)</sup>
- (2)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이 특히 중한 경우에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경우
  4. 다른 사람을 디지털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5. 제1항 제5호의 범죄를 통해 취득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6. 제1항 제5호의 범죄를 통해 취득한 내용물을 제1항 제7호의 범죄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7. 행위자가 21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 (3) 스토킹범죄의 결과로 행위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오스트리아 형법 제107a조 제3항(§ 107 öStGB, Beharrliche Verfolgung)<sup>3)</sup>

(3) 동조 제1항의 (스토킹)범행이 1년을 넘었거나 그 범행으로 인해 제2항의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들 규정은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자해나 자살과 같은 ‘특히 중한 결과’(besonders schwerer Fall; § 238 Abs. 2 StGB)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특히,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입법자들은 스토킹처벌 규정을 마련할 때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도망치다가 사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자살로 내몰리는 경우도 염두에 두었다. 피해자의 자살은 통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망 결과의 귀속을 배제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이 있음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자살이라는 자해 행위로 인한 사망은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초래된 심각한 손상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된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스토킹의 결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악화된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스토킹 범죄 발생 후 약 8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등<sup>4)</sup> 판례를 통해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적극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4] 교정시설 수용 중 스토킹범죄의 지속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되면 스토킹범죄가 중단되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상 스토킹 가해자의 신체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지언정 스토킹 가해자의 범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2)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238.html](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238.html), 2024년 5월 14일 최종접속.

3) <https://www.jusline.at/gesetz/stgb/paragraf/107a>, 2024년 5월 14일 최종접속.

4) BGH, Beschluss vom 15. Februar 2017 – 4 StR 375/16 – LG Stuttgart

직장 소재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소위 ‘편지 스토킹’이거나 지인 등을 통하여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지 않은 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sup>5)</sup>에 근거하여 검열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장하고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내용을 검열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부정

- 
- 5) 제43조(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들의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sup>6)</sup> 판결문에서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스토킹 가해자에 편지의 수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교정시설의 장은 편지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교정 실무에서도 스토킹 가해자가 작성하는 편지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검열한다거나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거나 협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발신을 금지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스토킹 가해자가 발송한 편지는 검열 없이 발송처리되어 그대로 교정시설 밖의 피해자에게 전달 되는 경우가 잦다.

피고인은 피해자(41세)가 운영하는 영화동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강제 탈퇴된 이후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 스토킹하였으며,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지속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었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로 발신인은 피고인, 수신인은 피해자로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2고단132, 2022고단2051(병합) 판결]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여, 59세)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스토킹범죄 및 보복 목적 협박을 하여 3차례의 실형 선고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았다. 피고인

---

6) 스토킹처벌법이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포착하여,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1317, 제안일자 2023. 4. 12.), 발의된 시점이 정부안 제출 이후로 다소 늦었던 관계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교정시설 수용 기간 중 “15년의 옥살이 꼭 찾고 말 것이다 기둘러라 사필귀정이라 했다…”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결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시점에 출소한 피고인은 출소 이틀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 선고 2022고합265 판결]

피고인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후에도 (최초) 구치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수용자에게 부탁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용자의 처로 하여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ㅇㅇ씨 여자친구분이지요 제 남편이 구치소에 있는데 ㅇㅇ씨랑 같은방이라고 부탁을 받아서요!! 연락이 없으시다고 편지와 접견 부탁한다고 전해달라시네용’이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회) 또한,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너무 보고싶다. 정말’, ‘너는 지금 내가 이곳(교도소)에 들어와 있는게 통쾌하고 속이 시원 할 거야 맞제 내가 너 때문에 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용서해주면 안되겠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건이 ㅇㅇ지방검찰청으로 넘어와 있는데’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발송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고단5578 판결]

## [5] 가해자 석방 통보 절차 미비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 또는 유치되었다는 것은 가해자의 범행 및 피해 정도가 중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및 재범 우려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는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협을 가할 우려가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은 구속 또는 유치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석방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시스템상 자동 통보되거나 형사사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따라 통보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애써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가해자가) 구치소에 갔다 나올 때 담당(검찰)수사관이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대처하기가 빠르는데 미리 통보를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가해자가 석방되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피해자가 다시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그때 가서야 이제 (가해자가 석방된 것을) 알 수 있게 있거든요.

## [6] 형사공탁의 기계적 양형 참작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가리키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2월 9일 시행되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공탁은 시행 직후부터 다양한 범죄 유형에 양형 감경인자로 두루 적용됨으로써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용이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스토킹범죄 관련 판례 중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사공탁을 이유로 들어 가해자를 선처한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다. 가석방 직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가 헤어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여 간 21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44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17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 찾아가 물건을 놓아 두는 등 누범기간 중임에도 지속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에 비춰보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친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양형에의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3039 판결]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른 끝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과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개월여 뒤 재차 같은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급기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46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24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총 86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며,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5cm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도 살인예비죄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의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1991 판결]

## [7] 성적 목적 미고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가해자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에서 스토킹한 경우를 상정하거나 그에 대한 가중 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하지 않는 경우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스토킹행위의 동기가 되는 성적 목적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 또한 검토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가해자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에서 스토킹한 경우가 극히 드물거나 ‘엽기적’이거나 가해자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나, 다음의 사례들은 가해자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스토킹이 결코 드물지 않으며 가해자의 성적 충동 억제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범죄임을 보인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면식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때까지 반복되는 범행에 노출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피해 두려움에 처해 있으며, 가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바꾸어가며 유사한 수법의 스토킹 범죄를 반복한다는 공통점 또한 발견된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19세 여성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1개월여 동안 4회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477 판결]

의 피고인은 주거지 청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 담당자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20여 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는 것 외에도 문자메시지로 여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친구 추가한 후 피해자에게 음란물 링크를 보내는 스토킹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고정315 판결]

피고인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카페 안으로 출입문 아래 틈을 이용하여 몰래 콘돔을 2회 넣어 두었으며, 역시 자신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꽃집에 4회에 걸쳐 콘돔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고단3817 판결]

위 사례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래 사례의 피고인 또한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성적 목적 스토킹을 반복하였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각각 50세와 80세로 높아 피해자나 수사기관 또한 가해자의 성적 목적을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0세인 피해자 A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성행위 내지 성매매, 성기를 연상시키는 물품, 즉 (최초) 여성 속옷 1개, 현금 10,000원 권 1매, 생리대 1개, (2회) 현금 10,000원 권 2매, 1,000원권 1매, 생리대 10개, 로또 용지 1장, (3회) 현금 10,000원 권 1매, 생리대 1개, 콘돔 1개, 고추꼭지 8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두고 갔다. 80세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도 (최초) 여성 속옷 1개, (2회) 생리대 1개, 현금 10,000원 권 1매가 담긴 종이봉투 1개를 두었다. [수원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2고단1643 판결]

## [8] 미성년 피해자 미고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 정의 및 처벌에 있어 성적 목적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나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반면, 국외의 스토킹 관련 법제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통상 부모나 학교 친구들이 피해 관련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알리지 않다가 피해가 확대 또는 장기화된 끝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기도 하고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됨을 고려할 때,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 언급한 사례 중 2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볼 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고려가 미흡한 부분을 법원이 양형실무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타당한 양형실무라고 여겨지지만, 미성년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고 성장환경을 침해한 가벌성을 염두에 둘 때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재량에 기대어 양형실무로 보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15세 여성인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지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영상통화를 하며 피고인에게 음부, 가슴 등 나체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다.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시킨다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백여 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잠정조치 불이행은 잠정조치가 결정된 후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 17. 선고 2022고합107 판결]

피고인은 15세 여성인 피해자와 3개월 가량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았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차단 하자 피해자의 SNS 계정에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법원은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내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사건 발생 후 1년여 경과한 시점이 되어서야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1164 판결]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미성년인 피해자의 취약성을 노려 스토킹범죄를 거듭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인 척하면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15세 여성인 피해자 A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짧은 치마 내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7회에 걸쳐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뿐만 아니라 역시 15세 여성인 피해자 B에 대해서도 주거지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검거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교복치마 차림의 미성년인 피해자들 몰래 같은 방법으로 촬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41회에 걸쳐 촬영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고단 6573 판결]

[표]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및 도출 근거

구분	문제점/쟁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정책과제
구성요건의 제한적 해석	[1]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형사사법 실무상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일자가 특정되어야 스토킹범죄 성립이 본격적으로 검토됨</li> <li>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및 보호조치가 강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인식</li> <li>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신문, 폴리그래프’와 같은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여길 정도에 이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헤어진 연인의 경우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거나,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헤어지자는 의사나 연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킹처벌법 규정 관련 형사사법기관 교육 강화 및 스토킹통념에 대한 인식 제고</li> <li>스토킹처벌법 개정</li> </ul>
	[2] 정당한 이유 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이유 없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나 담당자마다 상이한 가운데, 정당한 이유가 ‘넓게 해석이 되고 있’다고 인식</li> <li>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두었어야 할 것이라고 여기며, 가해자를 동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킹처벌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의 일부 판례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여야 함</li> </ul>	
	[3] 스토킹범죄 행위 태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가 부재 중인 빈집이나 이사 간 집에 찾아가는 경우 등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적용이 어렵거나 드문 등 기술발달을 악용하여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킹처벌법을 수시로 개정하여 변화하는 스토킹 행위 태양을 추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규정 신설을 적극 검토</li> </ul>	

구분	문제점/쟁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정책과제
	[4] 상대방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밀도 및 물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볼 때 학교직장 등에서 피해자를 매일 만나거나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상황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범위를 상대방 본인이나 동거인, 가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규정 간 괴리</li> <li>• 피해자 본인에 대한 스토킹으로 이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나 지인에 대한 별건의 스토킹범죄로 입건,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상황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범위를 상대방 본인이나 동거인, 가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규정 간에 괴리</li> <li>•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극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형에 의 가중 요인에 고려</li> </ul>	
	[5] 불안감 또는 공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 피해자라면 으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는 피해자다움의 전형</li> <li>•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로 의율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li> </ul>	
	[6] 지속적 또는 반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사법 실무상 잠정조치 신청 시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지 않으면 잠정조치 신청 등이 반려되거나 보완수사 요청이 이루어짐</li> <li>• 가해자가 발송한 메시지 등을 열람하여 표로 정리하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일람표 작성 부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 사건 수사를 꺼리거나 번거로워하게 되며 스토킹범죄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 수사절차 및 증거조사 보완 시스템 개발</li> </ul>

구분	문제점/쟁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정책과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의 공백	[1]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후속 피해자 보호조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고려되지 않는 경향</li> <li>•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별도로 취해지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한층 중한) 스토킹범죄에 재차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속영장이 갖는 피해자 보호 효과 주지</li> </ul>
	[2]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정조치 불이행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 결정을 통보받은 가해자가 유치 집행을 피해 도주하거나 잠적한 사이 유치 결정기간이 도과되어 버려 유치가 집행되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주하거나 잠적한 가해자를 찾아낸 시점부터 유치 결정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늦게 출석할수록 유치 집행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li> </ul>	
	[3] 피해자 사망 책임에 대한 상당인과 관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을 참고,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자해 또는 자살 간 인과관계 인정 범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li> </ul>
	[4] 교정시설 수용 중 스토킹범죄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에도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지인 등을 통하여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를 지속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이 스토킹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들의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li> <li>•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의 장이 편지의 수발신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li> </ul>	

구분	문제점/쟁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정책과제
	[5] 가해자 석방 통보 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 석방이 시스템상 자동 통보되거나 형사사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따라 통보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는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으므로 구속 또는 유치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석방되는 시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li> <li>가해자의 재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자 석방일시 등 형사사법기관 간 주요 정보 공유체계가 갖추어져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환류 및 협력 강화</li> </ul>
	[6] 형사공탁의 기계적 양형 참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킹범죄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양형에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 직후부터 다양한 범죄 유형에 양형 감경인자로 두루 적용됨으로써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용이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 양형기준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를 고려한 양형기준 마련</li> </ul>
	[7] 성적 목적 미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스톱킹이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들 스톱킹범죄가 가해자의 성적 충동 억제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규정을 상기할 때 스톱킹에 있어서도 스톱킹행위의 동기가 되는 성적 목적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됨</li> </ul>	
	[8] 미성년 피해자 미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나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감안한 규정이 없음</li> <li>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스톱킹범죄의 경우 스톱킹범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늦게 인지되거나 경찰 등에 신고됨에 따라 지속기간이 길고 횡수가 크며 피해 정도도 중한 경향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의 미성년 피해자 대상 스톱킹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킹처벌법 개정</li> </ul>

발표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보호 지원기관 및 피해자 인터뷰 결과

윤상연(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 보호 지원기관 및 피해자 인터뷰 결과

윤상연(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목차]

<p>1. 조사 배경 및 목적</p> <p>2. 조사 대상 및 방법</p> <p>[1] 스톱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p> <p>[2] 스톱킹범죄 피해자</p> <p>3. 조사결과</p>	<p>[1] 스톱킹범죄의 특징 분석</p> <p>[2] 스톱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 이후 변화</p> <p>[3] 스톱킹 대응체계의 한계</p> <p>[4] 개선방안 제언</p> <p>4. 결론 및 제언</p>
---	--

## 1. 조사 배경 및 목적

피해자들은 스톱킹범죄를 직접 겪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대응 체계를 통해 보호 및 지원을 받는다. 스톱킹범죄에 대한 여러 관련 기관 중 보호지원기관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실시되는 안전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처분 이외에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톱킹범죄 대응체계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스톱킹범죄 피해자 및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스톱킹

7) 이 발표자료는 경찰대학이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범죄에 관한 법률, 기관, 조치, 보호 및 지원 등 대응체계가 기대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 수요자의 입장(지원기관은 공급자에 해당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요자인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제도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사에서는 피해자 및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함으로써 현행 스토킹범죄 대응체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범죄의 보호지원 실태, 대응체계의 한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관해 심층면접 결과를 정리하였다.

## 2. 조사 대상 및 방법

### [1]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는 성폭력상담센터와 가정폭력상담센터의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9명의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 선정시 지역, 센터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YWCA상담소 등 여러 기관을 두루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지역 구분을 할 경우 면접 대상의 특징이 가능하여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초점집단 면접조사 참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연번	구분	지역	기관	피해자 지원 경력
1	1차 조사	부산·울산·경상	성폭력상담센터	약20년
2		부산·울산·경상	성폭력상담센터	약10년
3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약20년
4	2차 조사	인천·경기	성폭력상담소	약30년
5		인천·경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약20년
6		광주·전남	가정폭력상담센터	약25년
7		인천·경기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약10년
8		부산·울산·경상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약15년
9		대전·충남	YWCA	약10년

심층면접은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논의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1차 조사는 예비조사 차원에서 연구주체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는데, 먼저 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1:1 심층면접(대면 또는 Zoom 이용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한계를 확인하였다.

1차조사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은 연구목적에 맞게 5개 항목에 대해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실시되었다. 1차 인터뷰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보호지원기관 종사자 1차 인터뷰 질문지>**

- ※ 기초 질문: 스토킹 피해 관련 지원 경험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1. 스토킹범죄의 특성(가해자 & 피해자)
  2. 스토킹처벌법 제정(2021.4.20.) 후 지원센터의 스토킹 피해자 대응 업무의 변화 (양적, 질적) 내용
  3. 스토킹처벌법 개정(2023.7.11.) 후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변화
  4. 현행 제도의 한계점
  5. 추후 제도 개선 방향 및 구체적인 방법

다음으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신상 정보 없이 공통사항 정리, 표 2 참조)를 이메일로 사전 공유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의견(항목별 동의 여부, 반대·추가 의견)을 먼저 제출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화 통화를 통해 연구자와 종사자 상호간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별, 스토킹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표 2] 보호지원기관 1차조사 결과 내용 분류

구분	세부 목차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특징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신고, 지원 등 관련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 변화	스토킹에 대한 인식
	지원센터의 역할
	경찰 등 담당부서의 역할
	개정 이후 추가적 변화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	스토킹 판단의 어려움
	조치의 실효성 한계
스토킹 처벌법 개선방안	실효성 확보 방안
	지원 범위의 확대

## [2] 스톱킹범죄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절차 및 연구 참여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GIRB-G23-NY-0091)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스톱킹 범죄 피해자 중 피해를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경험하고, 지원기관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아본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목적에 맞게 5개 항목에 대해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실시되었다.

### <피해자 인터뷰 질문지>

1. 본인이 겪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스토킹 방식, 스토킹 기간 등).
2. 스토킹범죄를 신고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가해자 등으로부터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3. 스토킹범죄 신고 이후 각 기관에서의 조치 사항(구제 및 대응)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 자신에게 어떤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4. 본인에게 제공된 구제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한계 및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층면접은 먼저 지원기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자 6명을 모집하였다. 즉, 전국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관련 지원센터 소장들에게 공지 및 모집문건과 설명문을 제공하여 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지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1:1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부분까지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위에 그쳤다. 면접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통화시 직접 기록하여 참여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표 3] 면접조사 참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연번	지역	성별	연령대
1	서울	여성	40대
2	서울	여성	20대
3	경기북부	여성	40대
4	경기북부	여성	20대
5	경기남부	여성	40대
6	충청남도	여성	30대

### 3. 조사 결과

#### [1] 스토킹범죄의 특징 분석

##### 가. 가해자 특성

스토킹범죄자들이 상대방(피해자)을 소유하거나 통제,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요하고 충동조절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경우 편집증적인 증상, 정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구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례 1]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가해자가 야간에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 것은 물론, 커터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와 다시 만날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과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으며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여 안전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자신의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해자는 신뢰와 존중이 부족하고 심지어 피해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에게 미련이 남아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여도 일방적으로 이전의 좋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며 집착이 강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스토킹범죄자들은 각종 협박 수단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에서 공권력과의 관계(경찰 고위직)를 파시하거나 경찰이 직접 연락하는 등 공권력이 작동해야 가해자가 스토킹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자들은 피해자

등 약자와 판사 등 강자를 대할 때 이중적인 모습이 지적되는데,<sup>8)</sup> 법적제재 앞에서 일단 모면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 나. 피해자 특성

가해자의 지속적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PTSD 등으로 인해서 과거의 범죄가 기억 속에서 재현(침습)되기도 하지만 스토킹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부부, 연인 등 명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집착이 매우 강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귀는 관계에서의 스토킹의 경우 집착이 심해서 스토킹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해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가해자가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터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도 스토킹범죄의 피해가 가중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토킹범죄 처리를 어렵게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스토킹피해자의 경우 초기에는 가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이 넘쳐서 스토킹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의 대응에 미온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이 낮거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피해에 대한 인식과 신고가 빠른 편이지만 연령이 높거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여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 스토킹 행위가 중단되어도 향후 대인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이 지속되어 결국 퇴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다. 신고, 지원요청, 판단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범죄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범죄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으로 남아 있어, 관련 기관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신고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

8) 이런 이중성은 비단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가정폭력 가해자 역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 자신이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등이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의 원인을 피해자의 우유부단함보다 과거 스토킹범죄 행위의 개념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교제폭력과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지원기관 종사자도 있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스토킹 여부의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기준으로는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령 면식이 없거나 얼굴만 아는 정도의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반면, 피해자는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뚜렷한 침해행위가 없어 스토킹 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스토킹이 처음부터 강제적인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행위로 시작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판단이 어려운 한 가지 이유이다.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보내기, 선물보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특정 장소에서 지켜보기 등 비교적 경미 하거나 비폭력적인 행위로 시작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가해자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더 집요하고 강제적인 행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사례 2]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가해자는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니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결국 동생에게 보낸 비방 DM(direct message)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때 가해자가 자신에게 연락만 못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처벌까지 요구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한테 연락했을 때 가해자가 경찰에게 왜 연락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경찰과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경찰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설득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었다. 신고 이후 한동안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으나 잠정조치 이후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가해자에 따르면 검찰 직원이 가해자에게 연락해도 된다고 안내해서 연락하게 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어머니한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스토킹 행위의 판단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도 스토킹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가-피해자 간의 관계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이별을 결심한 이후에야 스토킹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전 사건이긴 하지만 30대 여성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이별 및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으로 찾아오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여 스토킹 신고만 무려 4회에 걸쳐 하는 등 남자친구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끝까지 회유와 설득을 반복하자 피해자가 다시 교제한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Acierno, Resnick, Kilpatrick(1997)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가해자가 배우자, 남자 친구 혹은 지인일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발견하였다.<sup>9)</sup>

스토킹은 일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등 지원 관련 안내를 듣고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과 사회적으로부터 불이익, 이전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죄책감’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2]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 이후 변화

### 가. 스토킹에 대한 인식 변화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도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스토킹이 형사처벌되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스토킹은 확실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부, 연인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이는 해결책 혐오(solution avers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결책 혐오는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스토킹을 신고했을 때 발생할 각종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결과가 불편한 경우 현재 자신의 상황을 스토킹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수용하도록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예전이나 현재나 아는 사람이나 일면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아마도 부부·연인관계/일면식/비면식 관계에 대한 판단과 절대적인 요청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된 문제라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나. 지원센터의 역할 변화

지원센터의 역할은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뢰관계인 동성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판례를 알려주고,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등 법률 상담의 측면에서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외에 스토킹 재발시 대응 방법을 포함, 각종 전개 상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피해자나 기관에서 법률적인 조언 요구, 변호사 선임, 법적 처벌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대한 전화 상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위축된 피해자를 지지하며,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심리적, 조직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 3] 피해자는 다양한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스마트워치는 4개월 이상 착용 중이고, 민간경호원 2명으로부터 4주간 경호를 받기도 하였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평가를 연계하였고, 잠정조치 2개월과 연장 2개월을 받았으나, 곧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아직 경제적 지원은 없었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연계 받아 2회 방문하였다. 상담을 지속하여 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상담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한다.

성폭력상담센터나 가정폭력상담센터와는 달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법률적지원, 생계비, 정신과 치료비지원, 심리치료비, 이사비용 등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지원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원래 5대 강력범죄 이외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대상의 차이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관계없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역할이며 죄명만 바뀌어서 들어오고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과거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 폭력 등). 생계비, 치료비(상해), 간병비(중상해), 상담, 취업지원, 학원비, 유족 구조금 등 원스탑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다.

## 다. 담당부서의 절차 변화

지원기관에서 느끼기에 경찰이 과거(법 제정 전)와는 달리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형사절차에서 단계별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고지(통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등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경찰의 적극 개입과 수사로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변화는 지원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적극 개입으로 상담센터나 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 의뢰되고 있다고 하며, 예전에는 스토킹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추행, 강간 등으로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만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다만, 현재는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젠더폭력)에 대해 민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으로 피해자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과는 비교적 협업이 잘되고 있는 편이나 경찰의 지원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큰 사건의 발생 시에만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예산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요구도 있었다.

## 라.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변화

2023년 7월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지원 환경의 변화는 반의사 불범죄 폐지, 피해자 이사비 지원, 피난처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실효적인 방안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 연장이 가능한 피난처를 제공과 관련하여 과거 제공되던 쉼터의 경우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난처에서 직장생활 등 지속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의 선호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처벌법 제정 및 개정 후 지원 환경이 변화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별도로 있지 않아, 가정폭력의 경우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송지원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이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례 4] 가해자의 접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고 불안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소송에 도움을 받고 민사상 문제도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인 지원 시 국선 변호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귀찮게 문의를 많이 해서 결국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나 검찰 모두 기관에서 먼저 연락을 주지는 않아서 아쉬웠다고 한다.

### [3] 스토킹 대응체계의 한계

#### 가. 스토킹 판단의 어려움

스토킹 지원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은 스토킹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한 판단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스토킹행위가 정의되어 있으나 일선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범위가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가정폭력 및 교제 폭력 등등 여러 가지 상담내용과 혼재되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했다.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스토킹 행위의 처벌 기준인 반복적 발생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의 기준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도 정확한 기준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통계 작성시에도 가정폭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스토킹에 대한 현재의 통계도 정확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단순히 횡수로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어 스토킹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를 스토킹처벌법에 사각이 존재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견도 존재한다. “사실혼 관계였던 노년의 부부가 헤어지기로 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의 집을 상대방의 집 앞에 가져다두었는데(1회)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 하여 일방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나. 조치 실효성의 한계

스토킹범죄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현행 조치가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된다. 가정폭력에서의 접근금지도 위반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벌칙적용도 잘 시행되기 힘든 상황으로 평가된다.

경찰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의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선조치 후 사후 승인)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가진 권한도 제한적이어서 접근 의도를 가진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범죄로 인정되거나 다른 범죄를 당할 때까지 장기간 참아야 하는 경우 많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례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한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후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경범죄 또는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가해자에게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 처벌 후 오히려 가해자의 행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확보도 중요하고, 긴급시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피해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는데, 가정폭력피해의 경우도 직접피해만을 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 가정폭력이든 스토킹범죄든 가족, 지인 등 간접 피해의 경우도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또한 스토킹이 1회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이나 보상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 다. 지원 방식

그동안 스토킹범죄에 대해 국가와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스토킹범죄 관련법 제정 및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으로 인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선 상담기관에서는 여전히 스토킹사건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피해지원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책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진행되거나 독립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가정폭력 피해지원사업에 통합하여 구색을 맞추고 있다. 실제 가정폭력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친밀관계에서의 폭력피해 상담 등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5] 경찰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효과가 미흡하였는데, 출·퇴근시 가해자를 만나 사용하였으나,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한 임시숙소 장소가 부적절하고 기간이 부족하였는데, 임시숙소로 모텔을 지정해주어서 학생인 자녀(고교생 딸)와 출입·생활하기가 곤란하였다. 그리고 임시숙소는 단기간 지원만 가능(약 일주일 정도 지원받음),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임시숙소(월세방)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또한 학생인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했는데, 전문적인 치료(정신과 진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 필요했고, 주말 및 야간 진료를 하지 않아 학교를 빠지고 가야하는 점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SNS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민간경호 서비스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심리상담 지원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이 이루어진 사건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사건 접수를 원치 않고 가해자와의 분리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서비스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

#### [4] 개선방안 제안

##### 가. 재발 방지 조치 강화

스토킹범죄를 반복적으로 지속한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이혜선, 이수정, 2010)는 의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톱킹이 반복되거나 조치나 처벌 이후 재발의 경우에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톱킹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실효적인 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스톱킹의 경우 주로 복합 범죄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톱킹범죄 초기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금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 사용과 재직 상황 등을 둘러싼 보호조치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일상을 존중하면서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3년 11월 2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해자에게도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10)</sup>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 시행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원기관에서도 스톱킹범죄의 경우에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채우는 것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접근금지 조치를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불안, 가해자의 위험성 등을 출소 전에 재평가하여 출소시 부대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톱킹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10) 법무부가 2024년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37/view.do?nttlId=16570&menuNo=300083&pageIndex=1>).

심리진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제기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교화를 위해서 수강명령 시간을 20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강명령 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경우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

[사례 6]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가해자가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도 추가 발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가 망상을 가진 경우와 같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측면에서 비전문가인 경찰, 지인(부모님)의 단순 경고, 회유만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전문가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스토킹 가해자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만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형의 집행과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내지는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 이후에도 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평가될 경우(행위자가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 나. 보호시설 이용 편의 강화

보호시설은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의 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쉼터 등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시책이 될 것이다. 보호시설의 운영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환영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구 수준이 높은 만큼 아쉬움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병합되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피해를 우려하여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건의 발생 특성을 고려

하여 가족 전체가 위협받아 남성이나 가족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이 다층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최근 개인화되면서 30평 쉼터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화되면서 입소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H 등의 지원을 받아서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보호시설의 편의 강화와 함께 장기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자는 보호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관련자(지인 등)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신변안전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다. 지원 범위의 확대

피해 당사자 외에 주변인의 간접피해에 대한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동거인, 가족에 대한 보호는 물론, 반려동물의 보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면 주거지 인근에 대한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데, 피해자가 출퇴근을 하거나 피해자의 (미성년)자녀가 등하교를 할 때 동행을 하는 신변 안전조치도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중 처벌이라는 법리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이전(이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중 처벌이라는 법리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이전(이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심각한 사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혼사 살고 있는 여성이었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줄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토킹이 지속되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기를 원하는데도 관계를 지속하려 하는 등 집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스토킹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지만, 가해자가 심각한 집착을 보인 이상,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행동의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또는 잠정조치에 의한 유치장 감금 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스토킹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신고 직후 경찰에서 안전조치나 잠정조치를 취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기본적으로 제도에 근거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지원기관에서는 일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거나 법적 구제를 위한 (국선)변호인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 이외에 피해자에게 절실한 이사비, 생활비, 수술비 등 각종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신고 대응 및 구제 절차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감사와 동시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스토킹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피해와 피해 우려에 대해서 충분한 회복이나 방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 상태에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외에 특히 경제적인 지원 등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외에도 담당 경찰관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이나 편견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신뢰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1)</sup>

피해자들은 대체로 제도가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발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데 있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

---

11) 직접적인 면담사례는 아니지만, 담당 경찰관들에 따르면 기관에서 지원을 결정해주는 경우에도 주거 이전비용이나 생필품 지원 금액이 실제 현실적인 지출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 비용으로 이사하여 자력으로 총당을 하였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였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의 경우이든 지원을 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사각이 없이,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할 때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스톡킹 피해로 인해서 각종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경우 심리적 고통까지 가중되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제한된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한계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조치를 위해서는 스톡킹범죄가 가지고 있는 가해자-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포, 유죄 판결 등 공식적 형사 사법 조치도 스톡커의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스톡킹 가해자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소지 크며(Eke et al., 2011), 접근금지명령도 접근 의도를 가진 스톡커에게는 의미 없는 경우 다수라는 점(Spitzberg, 2002)을 고려하면 물리적인 접근차단을 위한 조치 이외에 가해자가 심리적 문제(정신증, 성격장애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적 개입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대응에 그치지보다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2022).



## 지정 토론

- ① 전지혜 계장(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
- ②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③ 신동진 서기관(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④ 민고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⑤ 김은호 변호사(사단법인 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토론문

### 전지혜 계장(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여,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1차례 개정까지 이루어진 시점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구제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찾고자 이루어진 실태 조사는 많은 시사점을 주며, 특히 정책집행자, 수요자인 전담경찰관, 전담검사, 보호지원 기관종사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발표였습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발표문 전체 내용을 아우르기보다는 경찰청 추진 정책과 연관있는 2가지 논점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긴급응급조치의 활용실태에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한민경 교수님 발표문) 구성요건별 쟁점 -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당시,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면서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해외 유사입법 관련 판례나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최초 수사기관으로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하였다.

매뉴얼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에 관해 “「경범죄처벌법」(‘명시적 의사에 반하여’)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지와 같은 취지의 질문은 최 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 대상자였던 전담경찰관들이 한결 같이 거절의사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여,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음을 느낀다. 6명이 전체 경찰수사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내용, 관련 판례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강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교제폭력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는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범죄사실, 당사자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나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적극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별통보, 만남거부에도 불구하고 불안 공포감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지속 반복성을 검토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의율하고 있는 바, 실제 사례 적용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의 해석이 핵심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21년 최초 제정되었고, 현재까지는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시기로 일면 해석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생각도 든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였지만 대법원 판례<sup>13)</sup>가 나오므로써 사안적용시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 향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피해자 보호가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쌓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2) ‘스토킹대응매뉴얼은’ 24.1월,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축적된 판례 ▲ 일선 질의 내용 ▲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본을 발간하였으며,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은 없다.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단순 교제 거절, 피의자 연락에 무응답 의 과거 이력 등으로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여진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참고판례(헤어진 연인이 전화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439>)를 수록하였다.

13) 대법원 판례(2023도6411)는 반복된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라면 ‘스토킹행위’로 평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반복·누적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

## 2. (윤상연 교수님 발표문) 치료적 개입의 도입 필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 상담·치료는 유죄판결 선고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가능하다.(법 제19조). 그러나 수사·재판 단계에서 강력범죄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선고 前 선제적인 상담·교정을 실시, ‘가해자의 인지행동 개선, 집작성향 제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부 시도경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3년 연구용역<sup>14)</sup>을 통해, 시도청 사례에 대한 효과성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 및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되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언제든지 종결가능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 경찰이 담당할 사업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등에의 위탁’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sup>15)</sup>

## 3. 긴급응급조치 활용실태

구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경찰집행 (건)	법원승인 (건)	위반		경찰신청 (건)	법원결정 (건)	위반	
			건수	위반율			건수	위반율
'22년	3,403	3,146	370	11.8%	7,441	6,417	533	7.2%
'23년	4052	3727	327	8.8%	10,117	8,563	635	7.4%
대비(%)	19.1↑	18.5↑	11.6↓	25.4↓	36.0↑	33.4↑	19.1↑	2.8↑

14) 「수사단계에서의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동국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조영일)

15) 송재호 의원은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23.7월), 법사위 계류 중으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5.29.)시 폐기 예정

'23년 기준, 전년대비 긴급응급·잠정조치 건수가 대폭 상승하였고, 잠정조치 실시<sup>16)</sup>율은 '22년 64.4%에서 '23년 73.8%로 상승하였으며 비율도 높은 편으로, 현장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실시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감소,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로 제재를 상향한 것이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급응급조치보다 잠정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 있어, 긴급응급조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스토킹),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의 통합,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

16) (잠정조치 결정건수/ 스토킹 피의자 검거인원)\* 100

## 스토킹범죄, 더 나은 대응을 위한 과제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귀한 연구를 해주셨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가 보도되고 있고, 살인으로 귀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불특정인을 노리는 범행보다는 친밀한 관계, 연인관계, 배우자/파트너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결과의 참혹성도 그와 관련 있어 보인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스토킹이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단죄되고, 피해자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주셨다. 앞으로 법·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는 낡고 오래된 관행은 가해자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추적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는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거부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발제문에서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를 범죄구성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짜 거절했는지를 따져묻는 것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릴 소지가 있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이처럼 ‘단호한 거절’을 요구받는다. 스토킹범죄가 친밀한 관계, 즉 교제/배우자/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할 때 피해자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결별 시점에 스토킹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칼같은 거절의사’를 명시하고 이의 확인을 통하여 범죄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가해자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일 때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는 살인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는데 있어 가해자를 더 면밀히 추적하는 모양새다. 법률(California Penal Code § [Section] 646.9(A) – STALKING)은 “고의적으로, 악의적(타인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손상시키는 목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 또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괴롭히는 것의 의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타겟으로 행동의 과정(course of conduct)을 통해 성가시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하고, 위협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발제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스토킹행위 태양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법방식’과는 다르다. 국외에서는 우리와 반대로, 본법에서는 폭넓게 스톱킹행위를 규정하고, 업무지침 등에서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상대를 괴롭히는 스톱킹행위가 여러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태양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는 방식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을 벗어난 다양한 괴롭힘의 방식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국가가 규정하는 스톱킹범죄의 구성요건은 단지 공포와 두려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삶의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오스트리아), ‘사생활의 평온함을 저해하는’(독일), ‘개인의 자유를 위협에 빠뜨리는’(포르투갈), ‘일상의 평화를 방해하는’(벨기에), ‘사생활을 침해하는’(폴란드), ‘개인의 일상을 변경시키는’(스페인, 이탈리아)이 있고, 헝가리에서는 ‘피해자를 화나게 하는’을 요건에 포함하여 발제문에서 지적하듯이 피해자에게 한없이 무력하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범죄발생을 판단하는 구성요소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어서도 애매하지 않다. 외국 법률에서 말하는 행동의 과정은 횟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2회 이상을 지속적이라고 해석한다. 미국 주정부, 영국, 호주 등에서도 2회 이상의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공포심, 불안 등을 초래하는 경우 스톱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취약성에 있어 연령뿐 아니라 질병 또는 다른 여건(스페인)이 인정될 경우 6개월~2년의 형량이 가중된다. 슬로베니아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 또는 무력한(helpless)상태인 경우 3년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미성년,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전 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형량의 절반을 가중한다. 헝가리에서도 전 배우자/등록 파트너에 대한 스톱킹행위는 가중처벌된다.

영국에서 스토킹범죄는 최장 10년, 가중처벌일 경우 최장 14년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호주에서도 최장 10년형에 처해지지만, 호주 태스매니아주의 경우 가중요인이 고려될 경우 21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일랜드도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최장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스토킹범죄는 3급 중범죄로 최장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번째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소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발견들이 있었다.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특정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반복되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계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별 과정,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통제와 지배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가해행위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만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스토킹이 중대상해, 살인사건의 전조증상인 이유도 피해자를 소유·통제·지배하려는 성향에 기인한다. 상대방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왜곡된 믿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소유물에 대해 처벌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는 뒤틀린 욕망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경찰관이나 수사관에게는 온순하고 순응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잔혹한 행위를 서슴치 않다는 것도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서 보이는 태도를 기준으로 이 가해자가 위험한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경험에서 피해가 조사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음을 연구에서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이 넘쳐서’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유의미하다. 친밀한 관계 폭력의 피해자는 무분별한 피해자 비난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마라’는 비난이다.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집착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한 피해자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가해자는 관계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 자신의 통제 성향을 애뜻한 보살핌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장한다. 피해자가 너무 어리석거나 현명하지 못하여 ‘나쁜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여러 교활한 기법을 통해 상대방을 완전하게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스토킹범죄는 그러한 시도를 행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은 애정 및 돌봄, 보살핌과 전혀 관계없으며 학대적 행위라는 것을 국민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도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심도깊은 해석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데, 남자친구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고 수사기관에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 스토킹 피해 사실을 반복했다는 지점이다.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잔인함의 정도,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긴박한 위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으로 정말 위협에 처한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한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의 요구에 응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거나 행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채, ‘쉽게 말을 뒤집고,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습관적으로 신고했다 철회하는 피곤한 자’로 치부하고 말아버리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도 있다.

폭력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할 때 피해를 잘 방어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빈곤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도 있는데, 바로 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타의로 직장을 잃게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를 말한다. 스토킹범죄자들이 직장에 출몰하는 이유도 피해자의 고립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망을 끊어놓는 것,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하거나, 소란을 피워 퇴사를 권유받도록 하면, 피해자를 조종하기 더 쉬워진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친밀한관계 피해자를 위한 ‘안전휴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만이 최선이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마주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주는 방식보다는 가해자를 제재하는 방식이 훨씬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범죄자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인식구속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라면 잠정 조치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감행하고, 전자장치부착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발제문을 보건대, 우리나라의 입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를 어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지에만 효용이 있고, 현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또는 편견에 기반한 판결은 피해자를 오히려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때, 오늘의 여러 제안들은 모두 수용되어 마땅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오늘의 논의들이 입법, 제도화, 지침, 교육 등에 울곧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피해자가 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토론문



신동진 서기관(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민고는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1. 들어가며

발표 1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피해자 구제의 한계에 대해서, 발표 2에서는 스톱킹범죄 대응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 분석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해 제가 스톱킹범죄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 변호사로 스톱킹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하게 된 생각 몇 가지를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 2. 발표 1 관련,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의 공백에 대하여

#### 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연속성’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톱킹처벌법 제17조의2<sup>17)</sup>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

---

17) 스톱킹처벌법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톱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톱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해자 보호조치의 연속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위 신변안전조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따르더라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 때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신변안전조치는 경찰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단계, 법원 공판 단계, 판결 선고 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현재 위 신변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가·피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검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다. 즉, 사건의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호조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에서의 수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업무 협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업무 협조에 관한 규정은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피해자의 측면에서) ‘가해자 석방 통보 절차 미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 조<sup>18)</sup>에 근거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고,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자가 형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기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현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근거한 정보제공은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어 출소가 확정되면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시기를 통지하는 방식이다.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9)</sup> 현재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1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 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분결과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 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14호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 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 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있지 않은 것이 단순 행정적인 절차의 미비에 불과하다면 이는 보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3. 발표 2 관련, 조사결과에 대하여<sup>20)</sup>

발표 2.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 등이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조치 중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생각해보자. 위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 위반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이루어지는 조치를 생각하면 법원이 하는 잠정조치로서 접근금지 결정의 형태는 그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송하는 것뿐이다.

이에 대해 스톱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는 스톱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 (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sup>21)</sup>”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 전 접근금지 결정의 한계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20) 3.항은 스톱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중 하나인 접근금지 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은 발표 및 토론 과정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고민해보고자 하여 문제의 제기 차원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1)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2024. 1. 12. 보도자료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결국 가해자의 의지 내지 판단에 따라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는 등 잠정조치 위반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범행을 계획한다면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물론,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사례들도 존재할 것이다).

발표 2.에서 지적하듯 “체포·유죄 판결 등 공식적 형사 사법 조치도 스토키의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스토키 가해자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Eke et al., 2011)”면, 위와 같은 접근금지 결정은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2021. 11.경에는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sup>22)</sup>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사건이 존재하기도 하였다.<sup>23)</sup>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염려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망설이기도 한다.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현재의 접근금지 결정인 것이다.

---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을 의미한다

2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2599, 2022전도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1707, 2022전노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합1194, 2022고합76, 2022전고9 판결 범죄사실 일부 : 피고인은 2021. 11. 7. 03:4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스토키범죄와 관련하여 분리 및 퇴거조치를 당하였고, 같은 날 스토키범죄 등으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후 2021. 11. 9. 19: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4. 나가며

스토킹 피해자를 면담하면, “너무 무서워서 지난 몇 달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라고 말합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언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다른 스톱킹 피해자는 “(형집행으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안된다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싶지만 가해자가 제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해를 가할까봐 그것도 못하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문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톱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

#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과제



김은호 변호사(사단법인 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1. 서론

먼저 스톱킹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보고서와 발제문1, 2를 살피며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제·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현장에서의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문1은 스톱킹처벌법상의 정의 규정부터 꼼꼼히 살피며 구성요건 판단의 문제가 현장에서의 스톱킹범죄 판단 및 대응,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어떤 공백이 있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발제문2는 스톱킹범죄 피해자와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를 통한 스톱킹범죄 특징 분석과 현 대응체계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발제문의 문제의식과 제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본 토론문에서는 그중에서도 실무례에서 보이는 스톱킹처벌법 적용의 문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조력을 위한 과제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 2. 입법 목적에 충실한 스톱킹처벌법 적용 필요성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스톱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따른 스톱킹 성립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이것이 실무에서의 대응 한계를 낳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제문1에서 지적한 구성요건 중 ‘[1]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정당한 이유 없이’에 관한 부분은 법령 자체의

한계가 아닌, 일종의 관행적인 실무상의 태도로 인해 입법 목적 구현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 처벌의 정도가 중한 만큼 그 적용에 신중하게 되는 실무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법문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명시적인 징표를 확인하려 들어 이별 일자 등을 거듭 특정하게 함으로써 대응이 지체되고, [2]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수사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스토킹범죄의 성립 초기 가해자를 제재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정도가 심한 스토킹과 추가 범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스토킹범죄가 젠더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고려할때,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넓은 인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불평등한 젠더 위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잘못된 젠더 권력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sup>24)</sup>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통제하려 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은 관계가 지속된 정도와 친밀도가 높을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초기 판단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성요건 판단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정도의 스토킹으로 발전되지 않는 이상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의 구제와 추가 범죄 예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라는 스토킹처벌법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1) ‘명시적’ 의사에 대한 판단에 종속되지 말고, 법조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에 충실하게 사안을 판단해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원치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 젠더 관점을 갖추고 피해자

24) 특정한 사례에 대한 구성요건 성부 판단은 일괄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위의 두 문제가 중첩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체관계에 있던 경우, 피해자는 ‘헤어졌다’고 인식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하지 않으나 가해자는 이별 사실을 부정하며 거듭 ‘재회 시도’의 명목으로 스토킹을 행할 수 있는데, 위의 상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1) 쌍방이 인식하는 이별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일자를 특정할 수도 없어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데도 시일이 소요되고, 2)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게 되어 결국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발제문1에서 언급한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1528 판결문에서 정당한 이유로 제시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함’은 가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잠정조치 시행의 실효성 확보 문제

발제문1의 언급처럼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공간적 분리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에 가능한 분리조치의 방법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로서의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와 유치(제9조 제1항 제4호)가 있는데, 이중 유치의 경우 구속과 법적인 의미가 다름에도 효과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소극적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입니다.

유치보다 경한 수준의 잠정조치인 접근금지의 경우에도 하급심이 재구속·재체포에 준하여 동일 범죄사실에 기한 연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존재하는데<sup>25)</sup>, 스토킹범죄의 특성이나 입법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법원 판단이 피해자 보호의 공백 내지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의 피-가해자의 분리의 의미에 관해 법원 차원에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판단 문제와 같이 법이 명문상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은 취지가 있음에도 그간의 형사 실무에 따라 기계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5) 잠정조치 연장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55결정, 즉시항고에 대한 2022. 9. 21.자 2022로157결정. 이후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에서 파기환송 되었음. 대법원에서 원심결정이 파기되었으나, 최초 청구로부터 대법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 파기사유)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제208조, 제214조의3 참조)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재)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중 발췌)

잠정조치 연장에 관한 또다른 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연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청·청구 혹은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최대 9개월의 기간동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sup>26)</sup> 이는 이전 규정(최장 6개월) 대비 늘어난 기간이기는 하나 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9개월이라는 기간조차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법이 구속 대비 간이하고 효과적인 수단인 ‘유치’를 마련해 두었음에도 현실적인 집행이 어려워 가해자의 불출석, 도주, 잠적 등의 경우에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또한 유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서 법 개정을 통해 유치 결정에 보다 집행력을 부여하거나 기간의 기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떠오르는데, 실무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구속이나 유치가 된 경우에도 이후의 석방 통보 절차가 미비해 수사기관이 뒤늦게 모니터링을 통해서야 석방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문제 역시 공조체계 확립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논의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실무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

26)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수있다. <개정 2023. 7. 11.>

#### 4.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제문2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국선변호만 가능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는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에는 소위 말하는 ‘성범죄 형사 시장의 확대’를 포함해 해당 상황을 야기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가 그러한 법적 조력조차 제대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1)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장하고, 2)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정보접근권등이 제한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관련, 발제문2에서 언급한 사례4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수차례에 걸쳐 문의를 해야 했던 상황이 드러나는데, 이처럼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후속절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는 비단 스토킹에만 국한되지 않는, 성범죄 사건 일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sup>27)</sup>).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불충분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해당 진술조서에 기한 법적 구성요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스토킹범죄가 해석론에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의 최초 진술 시점에서부터 법적 조력이 이뤄질 필요성은 더욱 클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안내 및 이를 통한 법적 조력 제공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2) 관련, 성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에 그치는 면이 있어 형사절차에서 정보접근권이 제한되고, 피해자 변호사 또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을 통해 제공받게 됨으로써 긴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강화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27) 한겨레신문,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경찰 조사 다 마치고 선임, 조력권 침해””, 한겨레, (2023. 11. 23. 14:4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556.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556.html), (2024.5.22. 확인).

## 5. 결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실무가 정착될 때까지 발생하는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론의 문제 등 일부의 혼란은 현재의 스톱킹처벌법 문언에 충실하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고, 대부분의 스톱킹범죄가 젠더 위계에 기해 이뤄짐에도 정작 그 대응에는 젠더 관점이 부재하여 입법목적 실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도 우려스러웠습니다. 향후 스톱킹범죄 대응 법제의 보완 및 개선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함으로써 보다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

| 발행일 | 2024년 5월 28일

| 발행인 | 송 두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942 | F A X | (02) 2125-0926

| 웹사이트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ISBN 979-11-7214-010-6 9336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